

요 약

- ▶ 최근 건설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암시장(black market)의 형태로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으며, 등록기준의 결격 실태도 상당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, 건설업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팽배함.
 - 그 이유는 건설업 등록 과정이나 공공 입찰 단계에서 변별력이 미흡하고, 공사 착공이나 시공, 준공,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스크리닝도 허술하기 때문임.
- ▶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종별로 시공 능력이 미흡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자격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함.
 - 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1억원 이상 공사를 1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20% 수준(2014년)임을 고려할 때, 진입 제한 폐해보다는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
 - 따라서 기술 인력의 경우, 최소 기술자 수 가운데 30% 이상은 해당 업종에서 현장 실무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등록 과정에서 보유토록 규정
 - 기술 인력 이외에 대표자나 경영 임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 신설 필요
- ▶ 재정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2개월 평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, 일본의 경영사항 심사제도를 참조할 때,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를 내실화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시공 능력을 명확히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.
- ▶ 건설업 등록 취소 사유 중 상습적인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나 일괄 하도급 행위 등 명백히 건설업 내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항이나 혹은 중대한 부실 공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건설업 재진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유예 기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▶ 주기적 신고제는 행정 규제적인 요소를 제거하고, 제도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 - 주기적 신고제가 폐지될 경우,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기술자와 자본금 등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한 후,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영업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.
 - 매년 실시되는 시공능력 평가에서 재정 능력 검증을 강화하여 주기적 신고제의 60일간 평잔 증명서 제출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▶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에 의한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려면, 등록제도 이외에 보증이나 입찰 제도를 정비하고, 시공 과정과 사후관리 단계까지 부적격 업체의 감시·감독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